

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·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 번	안 호
	368

제출년월일 : 1994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이유
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과 그동안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등을 보완·개선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사항
 - 체육도장과 인접한 장소범위를 정한 규정의 삭제
 - 과태료의 상향에 따른 부과기준 보완(제3조)
-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개선사항
 - 과태료 부과대상자 관련규정 신설(제2조)
 - 이의신청과 관련한 조항 신설(제4조)
 -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한 준용기준 신설(제5조)

□ 첨 부

1. 충청북도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 및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(안) 1부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
3. 근거법령 관련부분 발췌 1부

충청북도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 및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 및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 (부과대상)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자로 한다.

- 법 제12조 단서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자.
-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
-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 자격 없는 자를 배치한 자
-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
- 법 제30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- 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
-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법 제4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령이 정하는 소규모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
- 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법 제4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령이 정하는 소규모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
-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

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① 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. 다만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를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1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. 이 경우 가중 부과할 때에는 과태료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4조를 제6조로 하고 제4조 내지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(이의신청)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때에는 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5조(준용기준)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